

2026년 제5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 
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 
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ㄴ 월 10 일

여수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**성현주**



여수시 규칙 제877호

붙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

##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00퍼센트”를 “100퍼센트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계류장 시설 상시사용료에 한정하여 5퍼센트”로,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주민등록초본(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)

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수시민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)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100분의 5로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별표 2의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 및 별표 3의 요트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###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명	사용구분	사 용 료			비고
		규 격	금 액		
			육상계류	해상계류	
계류장 및 적치장	일시사용 (척 / 일)	길이 7m미만	11,000	13,000	
		길이 7~8m미만	13,000	15,000	
		길이 8~9m미만	15,000	17,000	
		길이 9~10m미만	17,000	19,000	
		길이10~11m미만	19,000	21,000	
		길이11~12m미만	21,000	23,000	
		길이12~13m미만	23,000	25,000	
		길이13~14m미만	25,000	27,000	
		길이14m이상	27,000	29,000	
		상시사용 (척 / 월)	길이 7m미만	105,600	140,800
	길이 7~8m미만		140,800	176,000	
	길이 8~9m미만		176,000	211,200	
	길이 9~10m미만		211,200	246,400	
	길이10~11m미만		246,400	281,600	
	길이11~12m미만		281,600	316,800	
	길이12~13m미만		316,800	352,000	
	길이13~14m미만		352,000	387,200	
	길이14~15m미만		387,200	422,400	
	길이15~16m미만		419,200	454,400	
		길이16m이상	32,000원/m 가산		
전 기	실제 사용한 전기요금				
수 도	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				
비 고	1.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,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, 이 경우 1개월로 본다. 2.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,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. 3.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수시민일 경우 상시 사용료의 5% 감한다. 4. 15m 이상 선박은 m별로 32,000원을 인상한다.				

[별표 3]

### 요트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 설 별	시설물 사용		비 고	
	사용구분	사 용 료		
레포트교육장	1회	50,000		
샤워장	1회	어 른	1,000	
		어린이	500	
세척시설	1회	10,000		
인양기	1회	30,000		

※ 어린이는 초등학교 이하를 말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사용료 감면) ①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50퍼센트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<u>100퍼센트</u>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의 특별사유 및 그에 따른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. &lt;단서조항 신설 2023. 7. 13.&gt;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 &lt;신설&gt;</p> <p>3.·4. (생략)</p>	<p>제15조(사용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0퍼센트</u>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<u>계류장 시설 상시사용료에 한정하여 5퍼센트</u>----- <u>제4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ashed black;"/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주민등록초본(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)</u></p> <p>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